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4가단112567 손해배상(기)

원 고 남 00

피 고 김 00

변 론 종 결 2006. 10. 24.

판 결 선 고 2006. 11. 7.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3.부터 2006.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갑 16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 • 피고의 지위

피고는 '00무역'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용 방석, 시트커버, 쿠션 등을 생산, 판매하는 자이고, 원고는 '00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용 방석, 시트커버 등의 자동차용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나.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의 경위

- (1) 피고는 2002. 11. 20.경 소외 1로부터, 소외 1이 1992. 6. 17. 지정상품 농, 탁자, 침대, 식탁, 커어튼, 방석, 이불, 요, 베개, 의자커버에 관한 상표(이하 '선출원 등록상표'라 한다)를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0호로 등록한 상표권을 양도받아 권리이 전등록을 하였다.
- (2) 소외 2는 소외 1이 상표등록을 한 이후인 1998. 7. 20., 2000. 3. 6., 2002. 6. 12. 상표(이하 '후출원 등록상표'라 한다)에 관하여 각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특허청 상표등록번호 제000호로 상표등록을 하고, 소외 3은 상표등록번호 제0호에 대하여는 1999. 12. 16., 상표등록번호 제0호에 관하여는 2002. 11. 5. 각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등록을 하였다.
- (3) 피고는, 소외 2의 등록상표는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양도받은 상표권의 상표 와 유사하므로 무효인 상표등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 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3. 6. 20., 2003. 9. 24., 2003.

- 9. 6. 소외 2의 위 3개의 상표등록에 대하여 모두 무효라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소외 2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03. 12. 19., 2004. 3. 11., 2004. 3. 11. 모두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였으며, 이후 대법원은 2004. 7. 22. 소외 2의 각 상고에 대하여 모두 상고를 기각하여 위 등록무효 심결은 확정되었다.
- (4) 한편, 원고는 후출원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소외 3과 서브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소외 4로부터 2003. 4.경부터 후출원 등록상표가 부착된 자동차용 방석, 쿠션, 시트커버, 핸들커버 등을 공급받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왔는데, 피고는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은 직후인 2003. 9. 9. 원고에게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있으므로 후출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

피고는, 원고가 소외 4로부터 납품받은 자동차용품을 판매하여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원고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 및 그 집행 등을 하였다.

- (1) 2003. 12. 29.경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다가 심 문기일이 지정되자 2004. 1. 10.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 (2) 2004. 1. 12.경 청구금액을 5천만 원으로 한 유체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20. 그 결정을 받아 원고의 창고에 있던 물품들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04. 2. 17.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변론기일에 2회 연속불출석하여 결국 위 가압류신청은 2004. 8. 8. 취하간주되었다.

- (3) 그 후 다시, 2004. 8. 16.경 청구금액을 5천만 원으로 한 유체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18. 그 결정을 받아 같은 달 30. 원고의 위 창고에 있던 물품들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04. 9. 14. 가압류 해방금액 5천만 원을 공탁하여 같은 달 15.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 (4) 피고는 다시, 2004. 9. 15. 청구금액을 5천만 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4. 10. 1. 그 결정을 받아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라. 본안소송의 제기 및 소송의 경과

- (1)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04. 11. 2. 손해배상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9. 14. '원고는 피고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2003. 9. 9.경에는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그 이후에 판매하는 행위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고, 다만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은 2천만 원으로 인정한다'는 요지로 판시하면서,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이다)에게 2천만 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 (2) 위 판결에 대하여, 원, 피고가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불과 10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는 등 가압류제도를 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본안소송에서 인정된 정당한 채권액보다 과다한 가액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당한 가압류집행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그 위자료로 금 2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가압류집행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정당한 보전처분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부당한 가압류와 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집행한 경우 그 보전처분의 집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참조), 한편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에는 본안 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가압류채권자의 고의, 과실이란, 채권자가 보전처분의 전제요건인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의 흠결을 알거나 또는 알 수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집행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추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안소송의 패소 확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전처분이 부당한 것임이 판명된 때'에는 채권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해석하여야만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보전처분의 부당성' 여부는 이 사건 본안 소송의 확정과는 상관

없이 이 법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가압류의 정당한 피보전채권액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된 이상, 후출원 등록상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어서 원고는 후출원 등록상표를 사용한 처음부터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있으므로 후출원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것은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2003. 9. 9.경에는 위와 같은 판매행위가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2003. 9. 9. 이후에 후출원 등록상표가 부착된 자동차용 방석, 쿠션, 시트커버, 핸들커버 등을 판매하는 것은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입은 손해액(이는 곧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이다)에 관하여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상표권 침해행위로인한 손해액을 특정하여 입증하기가 어렵고, 한편 원고가 위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피고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판매가격이나 수익을 확정할 수 없어 결국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상표권자인 피고가 입은 손해액은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수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방석, 쿠션, 핸들커버의 각 매입단가는 적어

도 7,000원, 시트커버의 매입단가는 60,000원 정도, 그 판매가격은 방석, 쿠션, 핸들커버는 최소한 각 15,000원, 시트커버는 최소한 130,000원 정도인바,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위 2003. 9. 9. 이후에 입고된 물품은 모두 판매된 것으로 보아 총판매가액에서 총매입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득액으로 보면, 그 이득액은 26,580,000원 정도가 되고, 그 외 원고는 2004. 8. 17.경 소외 000에게 자동차용 방석 2개를 40,000원에, 자동차용 방석 1개와 핸들커버 1개를 55,000원에 각 판매하였으므로, 원고는 합계 26,647,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고 할 것이나, 위 수입에서 지출경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 전반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면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20,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이러한 결론은 이 사건 본 안소송의 제1심 법원의 그것과 같다).

(3) 피고의 고의, 과실의 추정

피고가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각 집행한 이 사건 가압류의 정당한 피보 전채권액은 결국 앞서 인정한 금 20,000,000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가압류 중 2004. 1. 20.자 유체동산가압류(청구금액 5천만 원) 및 2004. 8. 18.자 유체동산가압류(청구금액 5천만 원), 2004. 10. 1.자 채권가압류(청구금액 5천만 원)는 모두 위 금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피보전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위 채권가압류는 이미 유체동산가압류 해방금액 5천만원이 공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보전의 필요성 역시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가압류는 모두 부당한 과잉 보전처분이라고 할것이다.

따라서, 위 각 가압류 청구금액 중 위 금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피보

전권리가 없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어서 그 가압류 집행에 있어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부당한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달리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원고 역시 자동차용품의 거래내역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가압류신청 당시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과실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로 말미암아 원고의 창고에 보관된 물품들의 처분 또는 점유가 방해당하고, 5천만 원의 가압류해방 금액을 공탁해야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래하고 있던 은행의 계좌를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명예, 영업상의 신용이 침해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 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할 의무가 있다.

그 위자료 액수는,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원고의 재산적 피해 정도, 피고의 가압류 집행 횟수 및 그 경위,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특수성 등 이 사건 변론 전반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4. 9.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1. 7.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	